

이 보도자료는 2020. 12. 23.(수) 15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김영오

전화 054-250-4397/ 팩스 054-250-4348

보도자료
2020. 12. 23.(수)

제목 (주)포스코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 해외유출 및 특허침해 수사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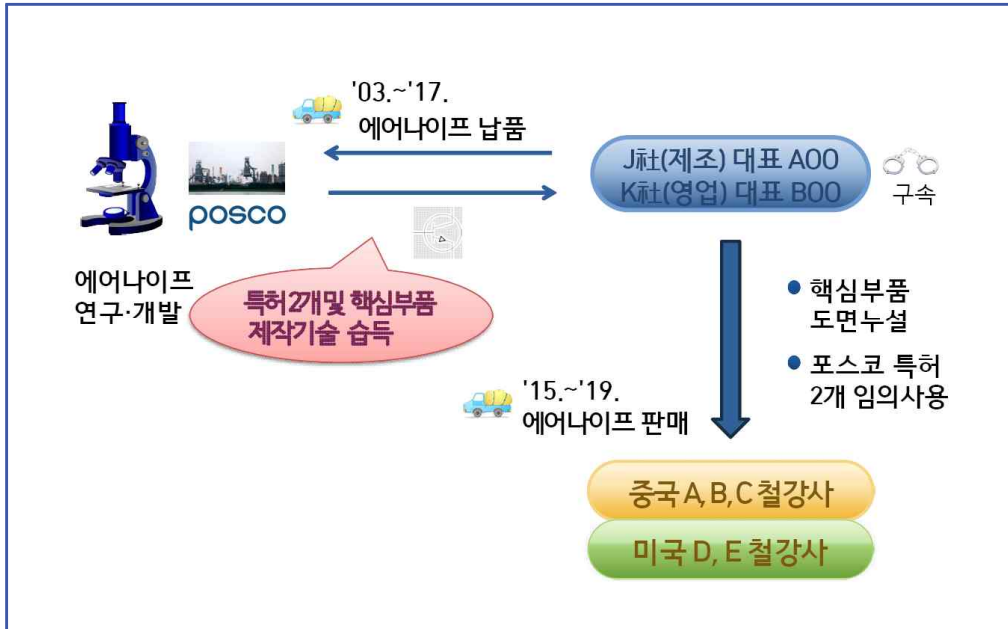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
(제11조 제1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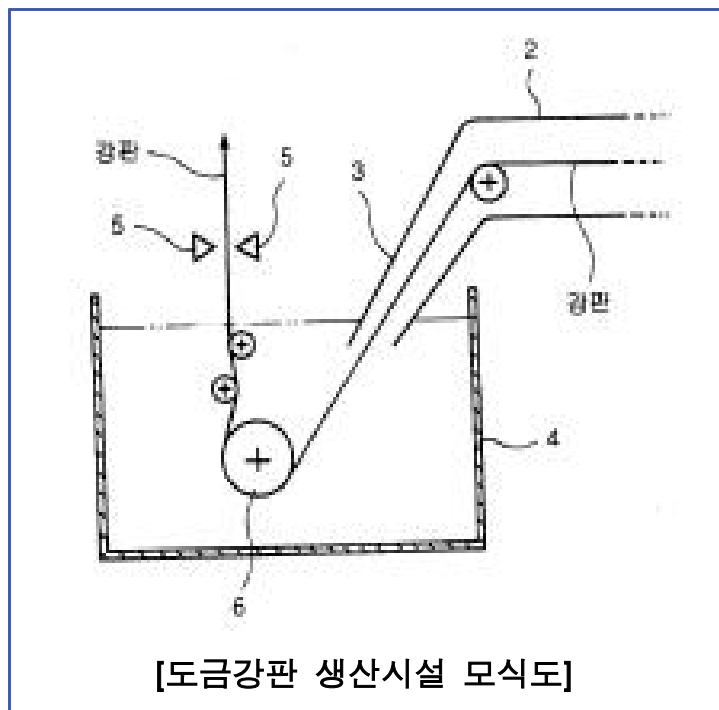
-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(부장검사 김중)는, (주)포스코 도금강판 생산시설의 도금량 제어장비인 에어ナイ프(Air Knife)를 납품하면서 (주)포스코 특허 및 핵심 부품인 립(Lip, 노즐) 도면을 획득한 것을 기화로,
 - 중국 최대 철강사 등 (주)포스코의 해외 경쟁업체 5곳에 (주)포스코 특허 2개를 사용한 에어ナイ프를 제작·판매하고 립 도면을 누설한 에어ナイ프 제작 및 판매업체 대표 2명(AOO, BOO)을 구속 기소하고,
 - 해당 법인 2개(J, K社를) 불구속 기소함
- ※ 에어ナイ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묻힌 강판에 기체를 분사하여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,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도금강판 생산시설의 핵심설비임
- ※ (주)포스코는 에어ナイ프 극산화를 위해 약 3년 이상의 시간, 약 5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였음
- ※ J社는 국내 최고의 에어ナイ프 제조업체이고, K社는 BOO이 (주)포스코 퇴직 이후 설립한 회사로 J社의 영업을 담당함

I

사건 개요



- 에어나이프는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도금강판 생산 과정에서 원자재가 되는 강판을 고온의 용융 알루미늄(약 600℃)이나 아연(약 450℃)이 담긴 욕조(4)에 넣었다가 끌어올렸을 때 기체를 분사하여 강판에 묻은 도금의 양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장비(5)임



- 피고인들은 2003.경 (주)포스코의 도금강판 생산시설인 광양제철소 PGL에 (주)포스코가 개발한 프로토 타입 에어나이프를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, 그 때부터 2017.경까지 프로토 타입 에어나이프에서 개량된 양산형 에어나이프를 (주)포스코 도금강판 생산시설 1, 2, 3, 5, 6, 7CGL, (주)포스코 인도, (주)포스코 멕시코, (주)포스코 타이 등에 납품해 왔음
- 피고인들은 위 개발·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, 2006.경 (주)포스코의 특허 2개가 적용된 에어나이프 상·하부 립(Lip, 노즐) 도면을 취득하게 되고, 2008.경에는 위 상·하부 립을 소폭 변경한 개량형 도면을 취득하게 되었으며, 그 과정에서 수년간 제조 기술도 축적함
-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2015.경부터 2019.경까지 사이에 포스코와의 비밀 유지약정을 위반하여 중국 A, B, C 철강사, 미국 D, E 철강사에 위 특허들 및 상·하부 립을 사용한 에어나이프를 판매하고, 립 도면도 송부함
 - 죄명 :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 (영업비밀누설등), 특허법위반
 - 피고인별 처분내용 별첨

II

수사 경과

- '20. 6. 4. 대검, 포항지청에 수사첩보 이첩
- '20. 11. 9. J, K社 압수수색
- '20. 12. 9. (주)포스코, 특허법위반으로 AOO, BOO, J, K社 고소
- '20. 12. 11. AOO, BOO 구속영장 청구
- '20. 12. 15. AOO, BOO 구속
- '20. 12. 23. AOO, BOO 및 J, K社 기소

1. (주)포스코 도금강판 생산시설의 핵심설비 기술 유출 피해 규명

- 에어나이프는 도금강판 생산시설에 필수불가결한 핵심설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설비인바, (주)포스코에서는 독일 및 일본 등 해외에서 비싸게 구입하다가 2000.경을 전후한 시점부터 약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비, 인력 및 약 50억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하여 2단계에 거친 전략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산화에 성공하였고, 이후 지속적으로 개량해 옴
- 그러나 설비 제작을 맡은 J社로서는 애써 개발한 설비를 발주처인 (주)포스코에만 납품하는 것보다 위 설비를 일부 수정하여 (주)포스코의 해외 경쟁업체들에게 판매하면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
- (주)포스코가 공동개발하고 생산시설에 적용하여 안정화 시킨 설비를 (주)포스코 납품 모델임을 내세워 중국 등에 무단 판매하게 되면, 해외 경쟁업체들은 개발비나 별도의 노력 없이 해당 설비를 도입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마치 (주)포스코가 중국 등지의 경쟁업체를 위해 에어나이프를 개발하고 개량해 준 것과 같은 결과 초래

2. 기술유출사범 엄단

- 중국 등지의 경쟁업체는 J, K社가 제공한 도면이나 기술정보, 역설계 등 방법으로 (주)포스코의 기술을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게 되었기에 사실상 (주)포스코의 에어나이프 국산화 노력이 무색해 짐
- 4년 동안 (주)포스코의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를 업으로 삼아 은밀히 지속 해오던 기술유출범행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 기술유출사범을 엄단함 ☑

[별첨]

피고인별 처분 내용

| 연번 | 피고인 | 직책 | 범죄사실/죄명 | 처분 |
|----|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|
| 1 | A○○ | J社 대표이사 | '15.~19.경 (주)포스코 영업비밀 및 특허를 사용하여 중국 등 (주)포스코 경쟁업체 5곳에 에어나이프 판매, 핵심부품 도면 누설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(영업비밀누설등), 특허법위반] | 구속기소 |
| 2 | B○○ | K社 대표이사 | '15.~19.경 (주)포스코 영업비밀 및 특허를 사용하여 중국 등 (주)포스코 경쟁업체 5곳에 에어나이프 판매, 핵심부품 도면 누설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(영업비밀누설등), 특허법위반] | 구속기소 |
| 3 | J社 | AOO 운영 회사 | 양벌규정 위반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, 특허법위반] | 불구속기소 |
| 4 | K社 | BOO 운영 회사 | 양벌규정 위반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, 특허법위반] | 불구속기소 |